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공 보

제246호 2011. 6. 24(금)

선 람	기관의 장

## 규 칙

- 의령군 규칙 제996호 의령군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 고 시

- 의령군 고시 제2011-32호 의령군계획시설(체육시설:자굴산골프장)  
실시계획 변경(2차)인가 고시
- 의령군 고시 제2011-33호 하천점용 허가고시
- 의령군 고시 제2011-34호 의령군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및 적용대상 고시

## 공 고

- 의령군 공고 제2011-361호 건설업등록기준 미달 추정업체 공시송달 공고
- 의령군 공고 제2011-363호 2011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 의령군 공고 제2011-364호 공시송달공고
- 의령군 공고 제2011-365호 노래연습장 직권말소 공고
- 의령군 공고 제2011-366호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수리 공고
- 의령군 공고 제2011-374호 공시송달공고
- 의령군 공고 제2011-383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지정 신청 공고
- 의령군 공고 제2011-385호 의령군관리계획(시설·유수지) 결정(변경) 입안 공람 · 공고
- 의령군 공고 제2011-386호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수리 공고
- 의령군 공고 제2011-387호 의령군 2011년 여행바우처 사업 공고
- 의령군 공고 제2011-406호 2011.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 공시송달 공고

- 의령군 공고 제2011-413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의령군 공고 제2011-415호 전문건설업 시정명령 공고

(다음면에 계속)

회 람									
--------	--	--	--	--	--	--	--	--	--

▲ 발행 : 의령군      ▲ 편집 : 기획감사실 (055) 570-2410, 행정 2410 FAX(055) 570-2040

의령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의령군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 의령군수

2011년 6월 24일

의령군 규칙 제996호

### 의령군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물품구매·제조·용역 및 각종 공사 등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를 말한다.
  - 가. 군 본청의 실·과
  - 나. 군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 다. 군 의회사무과
  - 라. 읍·면사무소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마.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 용역 및 이에 따른 용역
  - 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구매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가. 3억원 미만의 공사(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원 미만)
  - 나. 7천만원 미만의 용역(일반·학술연구용역은 5천만원 미만)
  - 다. 1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구매
3. 「경상남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경상남도의 계약심사를 받은 사업
4.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이 계

약금액의 1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5.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하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6.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요청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각 호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해당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심사부서

에 조치결과를 통보하는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조치)**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널리 알리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공사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시행일자	
수 신 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결 재
협 조				

공 사 명		요청부서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방법	
공사금액	- 총공사비 : - 도급비 : - 관급비 : - 이설비 :	천원	- 금회공사비 : - 도급비 : - 관급비 : - 이설비 :
설계자	- 상호 :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		
발주처	- 담당자 : (전화번호 : )		

### • 공사개요 :

### • 첨부 서류

- 계약심사 요청서,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포함)
- 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화일, Auto Cad 파일 및 도면)
- 풀센에 대한 내역서 및 실적공사비에 대한 내역서
- 기타 참고자료(방침서, 실시설계용역보고서, 견적서, 기술심사조건 등 보조자료)

발신명의

[별지 제2호서식]

## 용역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시행일자	
수 신 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결 재
협 조				

용 역 명			요청부서	
용역위치				
용역기간			계약방법	
용역금액	· 총용역비 :	천원	· 금회용역비 :	천원
예정원가 작 성 자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 작성자 :				
◦ 용역개요 :				
◦ 첨부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원가계산서</li><li>2. 비목별 기초계산서</li><li>3. 설계내역서(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li><li>4. 인쇄물산출 기초조사서(인쇄물이 있는 경우)</li><li>5. 기타 참고자료(과업지시서, 계획서, 견적서 등)</li></ol> <p>* 모든 제출서류는 전산파일 형태로 제출</p>			

발신명의	
------	--

[별지 제3-1호서식]

##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결 재
협 조				

건 명		요청부서	
산출금액			
구 매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p>- 상 호 : 대표자 :</p> <p>- 주 소 :</p> <p>- 전화번호 :</p>		
기 타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	--

## 물품구매 산출기초조사서

• 품 명 :

• 산출근거

(단위 : 원)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산 출 조 사 근 거				산출가격	
								적용단가	금액
공급가액									
부 가 세									
합 계									

작성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과장 성명 (인)

[별지 제3-2호서식]

## 물품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결 재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건 명		요청부서	
산출금액	원		
제 조 (수 리)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 타			
•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견적서 포함) 1부. 2. 일위대가표 3. 제조(수리)규격 및 사양서 1부.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 제조원가계산서

• 품 명 :

• 규 격 :

• 수 량 :

• 제조기간 :

비 목	구 分	단위	산 출 금 액(원)			구 성 비	비 고
			수 량	단 가	금 액		
제 조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부산물등(△)					
		소 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경 비	전 력 비 수도광열비 운 반 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사용료 기 출 貨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료 지급임차료 보 험 貨 복리후생비 보 관 비 외주가공비 안전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기타법정경비					
		소 계					
		일반관리비 ( )%					
		이 윤 ( )%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총 계					

작성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ㅇㅇㅇ 과장 성명 (인)

[별지 제3-3호서식]

##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결 재
협 조				

요청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체	상 호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			

###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mm × mm)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 •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기획 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 예정시에는 내역서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 인쇄물 산출기초조사서

• 품 명 :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分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 고
용 지 대			
전자조판 및 편집료			
필름출력비			
인쇄판비			
인 쇄 비			
제 본 비			
기 타			
계			
일반관리비			
소 계			
이 둔			
합 계			
공 급 가 액			
부가가치세			
총 계			

※ 경인쇄의 경우 “인쇄비란”에 산출근거와 산출금액을 표기하고, 산출금액에 부가세만 가산 적용.

산출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과장      성명      (인)

[별지 제3~4호서식]

## 인쇄물기획·편집 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시행일자	
수신자	
접 수	
접수일자	

				결 재
협 조				

요청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			
<b>• 기획편집내역</b> 1. 규 격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b>• 첨부 서류</b>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	--

# 인쇄물기획 · 편집 산출기초조사서

◦ 품 명 :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 고
기획료 또는 디자인비			
전자조판 및 편집료			기획편집 심사에 '전자조판 및 편집료' 를 산정한 경우, 인 쇄물 심사요청서에는 반드시 제외
필름출력비			기획편집 심사에 '필 름출력비'를 산정한 경우, 인쇄물 심사요 청서에는 반드시 제외
기타 비용			
계			
일반관리(5%이내)			
소 계			
이 룬(10%이내)			
합 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10%)			
총 계			

산출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과장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시 행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결 재
협 조				

공 사 명		요청부서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금액(최초)			
공사개요			
설 계 자	상호 : 책임기술자 :	대표자 : (전화 : )	
발 주 자	담당자 :	(전화 : )	

###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 첨부 서류

1. 계약심사 요청서,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포함)
2. 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3.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4. 설계변경 이유조서,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

발신명의

## 의령군계획시설(체육시설:자굴산골프장) 실시계획 **변경(2차)**인가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08-451(2008.09.11) 및 의령군 고시 제2008-31호(2008.12.30) 및 의령군 고시 제2009-35(2009.06.29)로 의령군계획시설(체육시설:자굴산골프장)로 결정된 의령군 칠곡면 내조리 산113번지 일원의 자굴산골프장 조성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2차)**고시 합니다.

2011. 06. 14.

### 의령군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의령군 칠곡면 내조리 산11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의령군계획시설(체육시설 : 자굴산골프장)
  - 명 칭 : 자굴산골프장 조성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 사업의 면적 : A = 1,431,600m<sup>2</sup>
  - 사업의 규모 : 대중제 27홀 골프장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당초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285-12(201호)  
성명 : 그린시티컨설팅(주) 대표이사 윤영택
  - 변경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002 코스모타워 6층  
성명 : 아시아신탁(주) 대표이사 이영희
5. 준공 예정일
  - 준공 예정일 : **당초 2011년 06월 30일**  
**변경 2013년 06월 30일(12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7. 관계도서 : 의령군청 건설도시과 비치

## 하천점용 허가고시

우리군 건설도시과에서 신청한 의령군 봉수면 삼가리 448번지 하천점용 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의거 허가한 사항을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1일

## 의령군수

### □ 허가사항

하천명	점용위치	허가면적	점용목적	허가기간	파허가자	
					주소	성명
신반천	봉수면 삼가리 448번지	15,768m <sup>2</sup>	토석 채취 (V=7,190m <sup>3</sup> )	2011.6.20 ~ 2011.8.18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건설 도시과장)

의령군 고시 제2011-34호

## 의령군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및 적용대상 고시

홍수, 호우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의령군 단기 및 중·장기적인 방재성능 목표 강우량(시우량, 연속강우량) 설정 기준 및 적용대상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1년 06월 일

# 의령군수

## 1. 의령군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시우량, 연속강우량) 설정 기준

(단위 : mm)

자치단체명	단기계획(2015년)			중기계획(2025년)			장기계획(2040년)		
	1시간	2시간	3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경상남도 의령군	70	105	125	80	120	140	90	135	155

## 2. 의령군 방재성능목표 강우량 적용 대상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에 따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적용대상 사업 계획 수립
-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5조에서 규정한 자연재해저감시설에 대한 사업 (신설·증설·개량 및 보수를 포함한다) 계획수립 및 시행
-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 등

## 건설업등록기준 미달 추정업체 공시송달 공고

재단법인 건설산업정보센터로부터 건설업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업체로 통보되어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관련자료 제출을 통지 한 바,  
이사 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 05. .

## 의령군수

### 1. 대상업체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영업 소재지	등록업종 (등록번호)	위반내용	비고
조은건설(주) 백승주, 변영오 194211-*****	경남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435-19, 3층	토공사업 (창원2002-02-07)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창원2002-10-12)	- 보증가능금액 실효 (기간만료 2010.12.03) - 보증가능금액 실효 (2010.07.21)	
정남건설(주) 정남석 200111-*****	경남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 285-5	석공사업 (광주동2009-01-01)	- 보증가능금액 실효 (2011.01.03)	

2. 공고기간 : 2011. 05. 25 ~ 2011. 06.

3. 공고 장소 : 게시판, 홈페이지, 군 공보

4. 공고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사실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관련 자료(보증가능금액 실효)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4호(영업정지 등)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의령군청 건설도시과(055-570-27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1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 2011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 합니다.

###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지가 기준일 : 2011. 1. 1.                          ○ 지가 공시일 : 2011. 5. 31.
- 공시 필지수 : 152,544필지                          ○ 필지별 가격 : 원 / ₩
  - 지번별 가격 내역은 소유자별로 발송하는 결정통지문, 군청 민원봉사실 및 읍·면 사무소에 비치된 지가열람부, 의령군 홈페이지(<http://wwwuiryeong.go.kr>)에서 확인

### 2. 이의신청

- 기 간 : 2011. 6. 1 ~ 6. 30(30일간)
- 신청인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신청방법
  -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군청 민원봉사실, 읍·면 사무소 및 의령군 홈페이지(<http://wwwuiryeong.go.kr>)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

### 3.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우리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4. 문의사항

의령군 민원봉사실(☎ 570~2188, 2189)에 문의 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11. 5. 31.

의령군수

##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동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예고서 및 가입촉구서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의거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2011. 5.

## 의 령 군 수

□ 공 고 기 간 : 2011. 5. 25 ~ 6.

□ 공 고 대 상 : 경남 의령군 정곡면 백곡리 681 김시정 외 36명 (붙임내역참조)

### □ 공 고 내 용

1. 위 납부의무자는 위 기간내에 의령군 경제과(☎055-570-2830)에서 고지서를 받아 가까운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시거나, 의령군청 입금계좌로[809-01-086161(농협)] 송금하여 주시고, 송금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즉시 의무보험(공제)계약을 체결하시어 2011.6.9.까지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의무보험 계약을 이미 체결하셨거나 붙임내역이 틀린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의령군청 경제과로(FAX055-570-2051)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징수법 제 24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의 규정에 의거귀하의 재산이 압류(대체압류 포함) 됨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무보험 자동차 운행 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노래연습장 직권말소 공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는 영업의 폐지 후 7일내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영업폐지 후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해당 업소에 대하여 동법시행규칙 제1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의 규정 절차를 거쳐 해당 업소의 등록사항을 직권말소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1. 5. 25. ~ 2011. 6.

2. 직권말소 대상업소

업 종	업 소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처분내용
노래연습장	소녀 노래연습장	최호영	의령군·읍 서동리 289-3	직권말소

3. 법적근거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 24 조

- 제1항 : 영업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2항 :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폐업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4. 직권말소일 : 2011. 5. 24.

5. 문의처

- 담당부서 : 의령군청 문화체육과
- 주 소 :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번지
- 연 락 처 : 055)570-2404, 팩스 : 055)570-2044

2011. 5. 25.

의령군수

##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수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수리사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일

### 의령군수

상호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영업소재지	신고수리일	다음신고일
디케이개발(주) (민병길)	석공사업 (의령2008-04-01)	경남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 504-7 3층	2011.05.25	2014.05.25 ~ 2014.06.24
경창건설(주) (한간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충북음성01-10-08)	경남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403-8	2011.05.25	2014.05.25 ~ 2014.06.24

## 공 시 송 달 공 고

2009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11조 제1항의 의거 농지처분명령을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11. 05. 31. ~ 06.
2. 공고내역 : 농지처분명령통지 반송자 공시송달 공고
3. 농지처분명령통지 대상자 현황

대상농지					농지 소유자		비고 (명령기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사유	주 소	성 명	
의령군 부림면 경산리	465-2	답	527	휴경	경북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210번지 성도대자연타운 101동 1012호	전혜경	
의령군 부림면 육방리	509	답	175	휴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74번지 232호	신수연	2011.5.20 ~11.19 (6개월간)
의령군 부림면 육방리	510	답	1,917	휴경	부산광역시 진구 면지동219-29 풀든마을 8동 302호	조종현	
의령군 유곡면 총신리	352-5	답	423	휴경			

4. 의견제출기간 : 2011.05. 20.~ 06.

### 5. 기타사항

가.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간주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 처분합니다.

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의령군 농정과 농정담당 (055-570-26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05. .

의령군수

##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지정 신청 공고

1.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담배소매업 폐업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담배소매업 폐업사항

소매인구분	성명(법인명)	영업장 소재지	상 호	폐업일자
일반소매인	허향식	경남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943-3	일용잡화	2011.06. 02.
일반소매인	최현미	경남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 168-18	리틀자이언트	2011.06. 02.

2. 이에 따른 인근지역의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고자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정기준에 다수의 신청이 있을시 추첨의 방법에 의해 한국담배판매인회 험안·의령 조합의 적합여부 결과 회시 후 적합자를 지정합니다.

가. 신청기간 : 2011. 06. 02 ~ 2011. 06.

나. 신청장소 : 의령군청 경제과(☎ 570-2823)

다. 구비서류

- ① 소매인지정 신청서(군청 경제과 비치), 신분증 및 도장
- ②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③ 우선지정 자격증명 서류(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1부
  - 신청인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경우

라. 참고사항

- ① 지정기준에 적합한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②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다만, 우선지정 대상자가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정 할 수 없음)

2011. 06. .

의 령 군 수

## 의령군관리계획(시설:유수지) 결정(변경) 입안 공람·공고

의령군관리계획(시설:유수지)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한 군관리계획(시설 :유수지)결정(변경) 입안을 위하여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06월 일

## 의령군수

### 1. 명칭 : 의령군계획시설(시설:유수지) 결정(변경)

### 2. 입안내용

#### 1) 방재시설

#### ■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유수지	저류 시설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 229-2번지 일원	-	(증)2,297	2,297	-	지하: 유수지
신설	B	유수지	저류 시설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 304-1번지 일원	-	(증)1,717	1,717	-	지상: 주차장(기결정) 부림면 신반리 301-3 A=1,256m <sup>2</sup> 지하: 유수지

## ■ 유수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A	신반(서동)지구 유수지 (저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수지(저류시설) 신설</li> <li>- 위치 : 부림면 신반리 229-2번지 일원</li> <li>- 면적 : <math>A=2,297\text{m}^2</math></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림면 신반리 저지대의 빈번한 침수로 지역주민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여 이를 예방하고자 신반천 상류에 우수유출저감 시설을 설치하여 침수예방 및 저류된 빗물을 수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함</li> </ul>
B	신반(중동)지구 유수지 (저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수지(저류시설) 신설</li> <li>- 위치 : 부림면 신반리 304-1 일원</li> <li>- 면적 : <math>A=1,717\text{m}^2</math> (증복결정(주차장) : <math>1,256\text{m}^2</math>)</li> </ul>	

3. 공람기간 : 신문 게재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4. 관계도서 열람 및 의견제출장소 : 의령군 건설도시과

5. 의견 제출방법 : 위 공람 기간 내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의령군수  
(참조 : 건설도시과장)에게 서면(우편번호:636-805/주소: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청 건설도시과)이나 전화(055-570-2730), FAX(055-570-2049),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정(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
-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끝".

의령군 공고 제2011-386호

##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수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수리사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일

## 의령군수

상호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영업소재지	신고수리일	다음신고일
(주)하나엔지니어링 (이계섭)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의령2005-14-01)	경남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943-11	2011.06.09	2014.06.09 ~ 2014.07.08
태성건설(주) (윤희표)	포장공사업 (대전중구05-16-02)	경남 의령군 가례면 운암리 79	2011.06.09	2014.06.09 ~ 2014.07.08

## 의령군 2011년 여행바우처 사업 공고

의령군에서는 국민의 국내관광 활동을 통한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여행바우처'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1. 6. 15.

### 1. 신청자격 요건

- 《개별 여행바우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법정 차상위계층인 자 신청
- 《복지시설단체 여행 바우처》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신청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법정 차상위계층인 자로 참가자를 구성하여 신청

구 분	개별 여행바우처	복지시설단체 여행바우처
여행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개인 여행</li><li>○ 가족동반 여행</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사회복지시설 단위 단체여행</li></ul>
신청자격 요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기초생활보장수급자</li><li>○ 법정 차상위계층</li><li>※ 한부모가족(모자,부자,조손), 차상위장애인수당,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구, 차상위 의료급여)</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사회복지시설</li></ul>
비 고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2. 신청방법

- 여행바우처 웹사이트([www.toucher.kr](http://www.toucher.kr))에서 온라인 신청(원칙)
  - ※ 복지시설단체 여행바우처 신청은 반드시 온라인으로만 신청하여야 함
- 개별 여행바우처 방문(오프라인) 접수 신청방법 등을 '4. 공고 및 접수기간 내용 참조'

구 분	개별 여행바우처	복지시설단체 여행바우처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14세 이상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법정차상위계층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li> <li>- 기초생활보장수급자·법정차상위가구에서는 가구당 1명만 신청하여야 함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 기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시설 단체가 일괄 신청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인 자, 인솔자 등으로 여행 참가자(보호자 등 포함하여 최대 20명까지 신청 가능)를 구성, 신청 ※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여행 진행·인솔을 위한 필요 최소 인원도 보호자로 구분하여 여행참가자로 신청 가능</li> </ul>
신청제한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1년 내 여행바우처를 지원 받은 적이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li> <li>○ 가족동반 여행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가족동반 여부, 동반가족 구성원 등의 정보를 기재하여야 가족여행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1년 내 여행바우처를 지원 받은 적이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li> <li>- 단, 최근 1년내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라 하더라도 여행 참가자가 다른 경우 신청 가능</li> </ul>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 제출서류 없음 (전산망을 이용 신청자격 요건 검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행 기획의도, 신청취지, 복지시설 특징, 여행 내 교육문화프로그램 (최소 2시간 이상) 운영 내용, 구성원 특이사항, 보호자 필요성 등 여행바우처 웹사이트 해당란을 반드시 기재하여 신청</li> <li>○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기관 현황 등 관련서류 파일 업로드 첨부</li> </ul>

#### \* 취약계층 여행 활성화를 위한 여행인솔자 등 보호자 지원

- 복지시설단체 또는 시군 기획 여행바우처 사업의 경우, 여행 참가자가 아동, 노인, 장애인 등으로 구성되어 보호자(행사진행자, 의료진 등) 동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자가 기초·차상위 등이 아니어도 여행 참가자로 보아 필수 인원만큼 1인당 15만원까지 지원 가능(필요 최소 인원만 신청할 것)
- 최종 지원되는 보호자 인원을 선정기관(지자체)에서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과도하게 신청할 경우 선정심사 시 감점 처리

### 3. 바우처 지원내용

- 개인여행·가족동반여행 또는 복지시설단체여행 경비를 여행바우처(카드)를 통해 지원
- 관광진흥법상 등록된 전국 여행사에서 취급하는 국내 여행상품을 여행바우처 카드로 구매·결제할 경우 1인당 15만원까지 지원
- 가족동반 여행으로 신청하여 최종 선정된 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 ※ 이용가능 상품 예시

- 여행사에서 취급 판매하는 국내여행 결합(패키지) 상품 : 숙박을 포함한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또는 교통·숙박·기타 관광서비스(관광·식사·쇼핑 등) 등이 결합되어 제공되는 상품
- 여행사에서 취급하는 모든 단일 상품 : 숙박(호텔, 콘도, 팬션 등), 철도·항공·선박 등 티켓 발권, 렌트카, 온천(스파)이용권, 에버랜드·아쿠아리움·놀이동산 등 각종 관광지 입장권·이용권 구매 가능

구 분	개별 여행바우처	복지시설단체 여행바우처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개인여행(1인당 15만원까지 지원)</li><li>○ 가족동반 여행(동반가족수에 관계 없이 20만원까지 지원) (예) 본인·가족 1명 동반: 20만원     본인·가족 2명 동반: 20만원</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1인당 15만원까지 지원     예) 甲복지시설 선정(20명 인원, 1박2일 국내여행)         20명×15만원=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     초과분은 복지시설 등 부담</li><li>* 최대 한도액 내에서 실제 구매·결제 금액 기준으로 지원</li></ul>
지원인원	20명	1개 단체 / 20명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여행사의 국내 여행상품 구매시 지원 -여행바우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여행상품, 여행사 등의 상품 구매 가능 -오프라인 여행사 매장 또는 여행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여행상품 구매 가능</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신청 후 바우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여행바우처 웹사이트 여행상품 견적관리 메뉴를 통해 여행사 대상으로 적합 상품 제안 및 견적을 요청</li></ul>

### 4.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11. 6. 15(수) ~ 2011. 6. 26(일)
- 접수기간 : 2011. 6. 27(월) ~ 2011. 7. 4(월) 18:00까지

- 해당 접수기간에 신청한 자에 대해 유효한 신청으로 접수 처리
- 선착순 신청 접수가 아니며,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소정의 심사 등 선정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
- 방문 접수장소 :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총무담당(관광업무)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여행바우처 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안내되는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온라인 신청, 접수가 원칙임
  - 《방문접수 신청》 접수기간 내에 본인 주소지 관할 지정 접수처 방문  
· 신청서식 등 지정처에 비치된 서류를 작성하여 현장 직원을 통해 대리 접수
  - 우편접수 불가

- 1) ※ 바우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필요 서식은 여행바우처 웹사이트에서
- 2) 다운로드 가능

## 5. 향후일정 안내

- 여행바우처 최종 선정결과 공지 : 2011. 7. 5(화) ~ 7. 8(금)
- 여행바우처 카드 발급 : 2011. 7월  
※ 신청자가 기재한 주소로 개별 발급, 배송 예정
- 여행바우처 사용 기간 : 2011. 12. 31까지

## 6. 기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바우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혀위 기재한 경우에는 선정 무효 및 향후 여행바우처 수혜자로 선정됨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바우처를 지원받은 때에는 관련 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하며,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바우처를 사용한 경우 지원하지 아니함
  - 신청 서류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 바우처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바우처 카드발급 등이 유선 안내되으며,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별도 안내조치가 없음
- 3) ※ 최종선정 결과는 여행바우처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공지
- 여행상품 변경, 취소 등은 여행사와의 계약 및 여행약관에 따라 처리되며, 본인 사정에 의한 상품 취소 등으로 인한 수수료 발생 분은 바우처에서 지원되지 아니함
  - 여행 시 안전과 사고발생 시 보장 등을 위해 여행자보험 가입 권장
- 4) ※ 복지시설단체여행의 경우 여행자보험 가입 필수
- 기타 자세한 안내는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주소지 기준) 읍면별 총무담당에(관광업무) 문의하시기 바람.

■ 대표문의 : 의령군 문화체육과 문화관광담당 ☎ 570-2403

## 2011.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 공시송달 공고

2011.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011. 4. 29. 결정 · 공시하고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도달이 불가능한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 다 음 -

1. 공 고 명 : 2011. 1. 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반송분) 공고
2. 공고기간 : 2011. 6. 15 ~ 6. 28 (14일간)
3. 공고내용 : 반송내역(별첨)
4. 공고방법 : 의령군 홈페이지 및 계시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령군청 재무과 세무담당 (☎ 055-570-23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6. 15.

의 령 군 수

##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83조제2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 실효)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 건설공사실적의 기준 미달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하였으나, 이사 감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11. 06. 20.

## 의령군수

### 1. 대상업체

상호 (대표자)	주소	처분업종(등록번호)	예정된 처분의 제 목	처분원인
조은건설(주) 백승주, 변영오	경남 의령군 의령읍 읍내동리 435-19, 3층	토공사업 (창원2002-02-07)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창원2002-10-12)	영업정지 (5월) 영업정지 (5월)	- 보증가능금액 실효 (기간만료 2010.12.06) - 보증가능금액 실효 (2010.07.21)
정남건설(주) 정남석	경남 의령군 의령읍 서통리 285-5	설공사업 (광주동2009-01-01)	영업정지 (5월)	- 보증가능금액 실효 (2011.01.03)
(주)휴먼건설 박상용	경남 의령군 지정면 봉곡리 773-1	설하수도설비공사업 (울산남구2004-13-02)	영업정지 (5월)	- 보증가능금액 실효 (2010.12.03) - 공사실적기준미달 (2008~2009)

2. 공고기간 : 2011.06.20 ~ 2011.07.04(15일간)

### 3. 청문일정

- 가. 청문일시 : 2011.07.05.(화) 14:00 ~
- 나. 청문장소 : 의령군청 4층 상설감사장
- 다. 청문주재자 : 의령군청 기획감사실 법무통계담당 정철근

### 4. 청문 시 유의사항

- 가.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나.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다.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령군 건설도시과 건설행정담당 ☎ 055-570-27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령군 공고 제2011 - 415호

## 전문건설업 시정명령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동법 제81조4호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명령하고 같은법 제85조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06. 22

## 의 령 군 수

### ● 시정명령대상 업체

상 호 (대표자)	주 소	업 종 (등록번호)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진아산업(주) (순두현)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956-3	석공사업	시정명령	건설공사대장 미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시행령 제26조 규정
경창건설(주) (한간현)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403-8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시정명령	건설공사대장 미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시행령 제26조 규정

● 시정명령 일시 : 2011년 06월 22일

● 법적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제4항 및 동법 제81조 제4호

● 시정명령 내용 : 건설공사대장 통보 이행 촉구(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 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

● 이행기간 : 2011.07.08한

● 기타 : 시정명령 불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 정보 시스템(<http://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